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97호 2020. 1. 2.



회 람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51)

훈 령

○ 제31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고 시

○ 제2019-125호 청양군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2019년 12월 31일

청양군 훈령 제31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및 팀 배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고시 제2019 - 125호

청양군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청양군 신규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지인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일원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

1. 제한지역 :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일원
2. 제한면적 : 927,844㎡(392필지)
3. 제한기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2년 이내의 기간 연장 가능)

   ※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산업단지 지정·고시) 완료시 해제
4. 제한사유 : 청양군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하여 향후 도

시계획·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 지정 승인 전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5. 제한대상 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토석의 채취
-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대상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를 위한 응급조치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인가·신고 된 개발행위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7. 열람장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 미래전략과 기업산단팀)

- 충남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94 (청양군 비봉면사무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미래전략과 기업산단팀(☎041-940-2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